산업안전보건법 개정·공포 주요내용

- '26.10.27(화) 대한전문건설협회 -

□ 현 황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* 개정·공포('26.10.27)

* 법률 제22122호

□ 주요내용

○ **(하도급 산안비 계상 의무화)** 그간 원도급 공사에만 산안비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나, 하도급 공사에도 의무적으로 산안비를 반영토록 하여 안전 비용 확보(제72조제1항)

○ **(공기연장 사유 추가)** 건설공사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사유에 폭염, 한파 추가(제70조제1항)

○ **(작업중지)**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 작업중지 요건 추가

- **(사업주의 작업중지)** 근로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조치 요구 가능(제51조제2항)

※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**수급인의 근로자도 도급인에게 조치 요구 가능**(제51조제3항)

- **(근로자의 작업중지)**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가능(제52조제1항)

○ **(과징금)** 안전·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% 이내 과징금 부과(제161조의2)

□ 시행일

○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('27. 4. 28부터)

- 공기연장 사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('26. 10. 27부터)